

고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9 - 13호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같은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 나. 면 적 : 76,436.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영도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시 노원구 공릉로38길 17, 2층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19년 1월 28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대지 면적 : 58,702.9㎡

2) 건축연면적 : 192,015.157㎡

3) 건축 규모 : 지하3층/지상4~25층, 아파트 및 연립주택 15개동 1,3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계	49㎡	59A㎡	59B㎡	74A㎡	74C㎡	74B㎡	74D㎡	84㎡	84B㎡	
계	1,308	47	373	21	384	4	96	4	344	35	2,032.84
토지등소유자	698	-	196	1	140	-	-	2	328	31	
보 류 지	5	-	-	-	3	-	-	-	2	-	
일 반 분 양	560	24	166	9	241	4	96	2	14	4	
소 형 주 택	45	23	11	11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분	신 설					폐 지			
	계	도로	공원	공공 공지	사회복지 시설	계	도로	공원	복지 시설
규모 (㎡)	17,139.6	4,937.5	9,511.8	1,304.3	1,386	6,083.4	2,702.5	2,520.4	860.5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2116-391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8.04.17, 2010.03.11)

(제1쪽)

관 리 처 분 계 획 변 경 인 가 서															인 가 번 호		2019-	
사업구분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명칭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성명	권영도			생년월일		1955.01.17.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4길 74, 9동 403호 (전화) 02-974-7566															
	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8길 17, 2층 (전화) 02-974-7566																
인가대상	사업의명칭	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계획면적	76,436.5㎡				거주가구 및 인구		거주가구			거주인구							
	정비건축물	71동						712			1,780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2008.10.16.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42개월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68,965.36		국공유지			6,468.4			그밖의 토지						
	76,436.5㎡ (69필지)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 자 매수	존치 국공 유지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유지 불하	국공유지 무상양수	17,830.17							
		65,074.73			11,361.77				385	6,083.4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정비기반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소계	공동주택	그 밖의 건축시설	소계	도로	공원1	공원2	공공 공지	사회 복지	소계						
	시행전 (㎡)	75,433.76																
	시행후 (㎡)	76,436.5	59,296.9	58,702.9	594	17,139.6	4,937.5	7,752	1,759.8	1,304.3	1,386							
건축물 및 건축 시설	시행전 건축물	허가 건축물	71동				무허가 건축물		0동(신발생 동)									
	시행후 건축 시설	용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 수		건축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58,146.58	15		지하3~지상25층		1,308		189,982.32							
			분양	56,582.9					1,263		184,928.04							
			소형	1,563.68					45		5,054.28							
	상가	556.32	1		지하1~지상1층				2,032.84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계	49㎡	59A㎡	59B㎡	74A㎡	74C㎡	74B㎡	74D㎡	84A㎡	84B㎡						
		계	1,308	47	373	21	384	4	96	4	344	35	2,032.84					
		토지등 소유자	698	-	196	1	140	-	-	2	328	31						
보류지		5	-	-	-	3	-	-	-	2	-							
일반분양		560	24	166	9	241	4	96	2	14	4							
소형		45	23	11	11	-	-	-	-	-	-							

(제2쪽)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 분	분 양 신 청				수인이 1인인 분양대상 자로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 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 계	근저당	압류 및 가압류	기타
	신 청 수	682	682			75건 (153인)	319	319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 리 자	대 상	분 양				청 산	수 용	협 매 의 수	그 밖 의 분
			소 계	주 택	상 가	그 밖의 용 도				
	계	713	682	675	7		30			1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707	682	675	7		24			1
	토 지 소유자	6					6			
	건축물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대 상	319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	-----	------	--	-------	---	-------------	---

세입자 대 책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정비 기반 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 모 (㎡)	설치비용 (천원)	관 리 청	종 류	명 칭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로		4,937.5	14,489,915	노원 구	도로		2,702.5	2,702.5	2,702.5
	공원		9,511.8	19,836,547	노원 구	공원		2,520.4	2,520.4	2,520.4
	공공공 지		1,304.3	3,837,113.5	노원 구	복지시 설		860.5	860.5	860.5
	사회복 지시설		1,386	13,889,161. 7	노원 구					

평가액 또는 추산액 (원)	시 행 전				시 행 후			
	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 지	건 축 물	
	225,111,502,235	10,706,465,000	214,405,037,235		622,484,101,000	280,117,845,000	342,366,256,000	

자금운용 (원)	총 소요사업비	406,377,134,000			수입 추산액	622,484,101,000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노 원 구 청 장 인										

										수수료
										없 음

(제3쪽)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 고시 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 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